



한국경영교육학회 연구윤리교육

박성환 교수 (한밭대학교)

2021. 05. 01. (토)

연구윤리 교육자료에 대한 설명

- 본 연구윤리 교육자료는 **2021년도 한국회계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2021.04.24.)** **연구윤리 특강**에 사용되었던, '**연구윤리 교육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본 교육자료는 다음 자료를 참고한 것임
 - (a) 한국연구재단이 발간 배포한 **연구윤리 질의응답집(2021.3.)**



(b) 연구윤리정보센터의 교육자료



(c) 교육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표절

Q

1)논문 초록의 연구배경 부분은 거의 관련 근거를 담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초록에도 인용표기를 해야 하는지?** 2)**국가 보고서의 통계 내용을 근거자료로** 논문 작성 시 이에 대한 **인용표기를 해야 하나?**

A

- 1)논문의 초록 또한 표절의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초록이나 연구결과에서 그대로 인용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논문의 초록은 기존의 학문적 공감대나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되 저자 자신이 고유하게 표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축약된 문장과 분량에서 발생한 유사도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감안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표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정부에서 연구 및 다양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데이터를 이용한 후속 연구는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용데이터의 범위는 최소화 하면서 해당 출처를 명확히 표기만 해주신다면 이로 인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저자표기

Q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은?

A 해당 연구나 논문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며, 연구과 제에 대해 잘 알고 투고 학술지 편집인이나 다른 연구자 및 독자들의 문의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연구자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반면에 “해당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공헌도가 있을 경우”는 이 문장만으로 본다면 공동저자이기보다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언급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 생산, 분석,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공동 저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자표기

Q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은?

=> “연구과제 책임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A

이에 대한 정해진 공식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참여한 연구진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정해 실천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혹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저자의 범위나 순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저자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공헌보다도 해당 연구에서 ‘학술적 (지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학문 분야별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저자표기

Q 이미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할 때 저자가 바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A 기존에 한글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외국 학술지에 내면서 **공동 저자를 배제한 경우**, 그 저자가 외국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에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하지 않아 저자 자격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 기여가 있는 경우에 배제되었다면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표기

Q

소속이 다른 교수 2명이 공동 연구를 수행 하며 각 대학으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개의 사사표기도 가능한지?

A

사사표기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연구결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편향성, 즉 이해상충 가능성을 학문 공동체에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2개의 기관에서 각각 연구비를 지원받아 1개의 과제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사사표기

Q

소속이 다른 교수 2명이 공동 연구를 수행 하며 각 대학으로 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개의 사사표기도 가능한지?

A

첫째, “연구성과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귀속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연구성과가 어느 기관에 귀속될 것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1개의 연구 성과를 2개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자기표절’, 즉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A기관의 연구비로 B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비 횡령시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2개의 기관들이 자신들의 연구비가 1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데 함께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해 두 기관 사이에 ‘공동연구’ 형식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 계약에는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 비율로 연구비를 분담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성과의 소유 및 활용 권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입니다..

표절

Q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즘 많은 이슈가 있는 표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은데, 표절 유사도 검사 기준은?

A

표절의 기준은 숫자로 정할 수 없다. 학문 분야에 따라 원문을 많이 인용하는 분야가 있고, 적게 인용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문을 아주 적게 인용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인용했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의 기준을 단지 유사율 '%'로써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는 대학이나 학회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며, 2차적으로는 유사율 '%'가 높게 나오더라도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예 : 원문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연구, 학계에서 일반적 지식 (common knowledge)으로 통용되는 부분 등)를 전문가들이 직접 판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침해

Q

매체의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논문 내용에 메커니즘이나 실험 설명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 표절인지, 해당 잡지사나 신문사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지?

A

1)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 및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면 논문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저작권침해

Q

매체의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논문 내용에 메커니즘이나 실험 설명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면 표절인지, 해당 잡지사나 신문사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지?

A

2) 만약을 위해 원저자와 출판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구글”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한 후, “도구” 메뉴를 클릭하면 “재사용 가능”,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등 저작권 유/무를 설정하여 걸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3) 1-2개 이미지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 필요한 이미지의 양이 과도하다면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작권침해

Q

온라인 강의교안 제작에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자료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표절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문제도 해당하지 않는지?

A

- 1) 교육부가 고시한 제3조 1항은 이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학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사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에 따른 사업,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연구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의 규정을 적용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교안’ 표절은 제12 조에서 규정하는 표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학 자체의 규정에서 ‘온라인 강의 교안’을 연구 저작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면, 대학 자체의 규정에서도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표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온라인 강의 교안을 ‘연구’ 저작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원작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이 구현되었다면, 충분히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 내용을 이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 A